HANSHIN THEHUE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11월 19일(목)]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3159-342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19.(목)	2026.11.30.(월)	2026.12.01.(화)	2026.12.02.(수)	2026.12.09.(수)	2026.12.11.(금)~ 2026.12.13.(일)	2026.12.21.(월)~ 2026.12.23.(수)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30.(월)	2026.12.01.(화)	2026.12.02.(수)	2026.12.09.(수)	2026.12.11.(금)~ 2026.12.13.(일)	2026.12.21.(월)~ 2026.12.23.(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	

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 - 11525호(2026.11.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층, 4개동 총 272세대[조합 167세대, 보류지 3세대] 중 일반분양 102세대 [특별공급 61세대(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16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8세대, 신생아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026000585	01	059.8728	59	59.8728	19.8565	79.7293	49.3094	129.0387	35.1544	26	3	3	5	1	3	4	19	7	2
	02	071.9348	71	71.9348	20.7750	92.7098	59.2434	151.9532	40.8777	45	5	4	6	2	3	4	24	21	4
	03	084.9614	84	84.9614	21.6469	106.6083	69.9717	176.5800	47.0059	31	3	4	5	1	2	3	18	13	8
	합 계									102	11	11	16	4	8	11	61	41	14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별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5%)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30일 이내	중도금(60%) 1차(10%) 2027-05-17	2차(10%) 2027-09-17	3차(10%) 2028-01-17	4차(10%) 2028-05-15	5차(10%) 2028-09-15	6차(10%) 2029-01-15	잔금(35%) 입주지정일
59	26	103동 1,2호 104동 5,6호	1층	2	299,630,000	299,630,000	599,260,000	10,000,000	19,963,000	59,926,000	59,926,000	59,926,000	59,926,000	59,926,000	59,926,000	209,741,000
			2층	4	302,750,000	302,750,000	605,500,000	10,000,000	20,275,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211,925,000
			3-5층	8	312,115,000	312,115,000	624,230,000	10,000,000	21,211,500	62,423,000	62,423,000	62,423,000	62,423,000	62,423,000	62,423,000	218,480,500
			6-9층	2	315,235,000	315,235,000	630,470,000	10,000,000	21,523,500	63,047,000	63,047,000	63,047,000	63,047,000	63,047,000	63,047,000	220,664,500
			10-17층	10	322,360,000	322,360,000	644,720,000	10,000,000	22,236,000	64,472,000	64,472,000	64,472,000	64,472,000	64,472,000	64,472,000	225,652,000
71	45	102동 3,4호 104동 3,4호	1층	4	343,265,000	343,265,000	686,530,000	10,000,000	24,326,500	68,653,000	68,653,000	68,653,000	68,653,000	68,653,000	68,653,000	240,285,500
			2층	4	346,840,000	346,840,000	693,680,000	10,000,000	24,684,000	69,368,000	69,368,000	69,368,000	69,368,000	69,368,000	69,368,000	242,788,000
			3-5층	11	357,570,000	357,570,000	715,140,000	10,000,000	25,757,000	71,514,000	71,514,000	71,514,000	71,514,000	71,514,000	71,514,000	250,299,000
			6-9층	8	361,145,000	361,145,000	722,290,000	10,000,000	26,114,500	72,229,000	72,229,000	72,229,000	72,229,000	72,229,000	72,229,000	252,801,500
			10-17층	18	364,720,000	364,720,000	729,440,000	10,000,000	26,472,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255,304,000
84	31	101동 2호 102동 6호 104동 1,2호	1층	4	388,925,000	388,925,000	777,850,000	10,000,000	28,892,500	77,785,000	77,785,000	77,785,000	77,785,000	77,785,000	77,785,000	272,247,500
			2층	4	393,835,000	393,835,000	787,670,000	10,000,000	29,383,500	78,767,000	78,767,000	78,767,000	78,767,000	78,767,000	78,767,000	275,684,500
			3층	4	406,170,000	406,170,000	812,340,000	10,000,000	30,617,000	81,234,000	81,234,000	81,234,000	81,234,000	81,234,000	81,234,000	284,319,000
			4층	1	411,170,000	411,170,000	822,340,000	10,000,000	31,117,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287,819,000
			11층	3	422,895,000	422,895,000	845,790,000	10,000,000	32,289,5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296,026,500
		101동 1호 102동 1,2,5호	1층	4	394,725,000	394,725,000	789,450,000	10,000,000	29,472,500	78,945,000	78,945,000	78,945,000	78,945,000	78,945,000	78,945,000	276,307,500
			2층	4	398,835,000	398,835,000	797,670,000	10,000,000	29,883,500	79,767,000	79,767,000	79,767,000	79,767,000	79,767,000	79,767,000	279,184,500
			3층	4	411,170,000	411,170,000	822,340,000	10,000,000	31,117,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287,819,000
			11층	3	422,895,000	422,895,000	845,790,000	10,000,000	32,289,5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296,026,500

3 청약신청자격 (유형별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필히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 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 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 기타 주요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6-101-0006700 호	₩ 47,881,912,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VAT별도)

구 분	건 축	전 기	소 방	정보통신
회사명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서광이에프	(주)서광이에프	(주)서광이에프
사업자등록증번호	214-81-15867	232-81-01003	232-81-01003	232-81-01003
감리금액	1,455,194,400	170,000,000	65,000,000	115,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행신2의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한신공영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5971-0002118	110111-0075683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97, 301호(행신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 견본주택 위치 안내



현장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
분양문의	02-3159-3428
공식 홈페이지	https://gy-thehue.com

시행 | 행신2의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 한신공영(주)

신청자격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요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